숙박업 등록관련 법령

(2022.6.9.기준)

| 관계법령 | 업종 | 구분 | | | 비고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
| | <u> </u> |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(20) | | | *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, 숙박업에서 제외 |
| 공중임생 라 남 상징시구의 어 있 시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| 숙박업 (허가서 명칭: 성상 신고등 |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합 (20. 일반숙박업 | | 12.1월10일 전규개성) 취사시설은 제외 | 되는 시설 1.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.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. 청소년 수련시설 4.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|
| | | 생활숙박업 | | 취사시설을 포함 | * 기존 영업중인 서비스드 레지던스 호텔은 그간 관련 법령이 없어 불법이었다가, 2011년 12월 동 영이 개정되면서 생활숙 박업 등으로 등록이 가능. 단, 건축법상 "오피스텔"로 허가 받았는데, 숙박시설로 개정해야 함. |
| 발생진용법 당:청청시구과육 어진 당한 광체 당한 광체 문화도 문화 | 라마하다* (허가서 (허명과 가장 등 *사등 | 호텔업 | 숙한추관제숙-L오연에설께 의합갖 의에서 발동-공수시함이 생기 발동-공수시함이게 상하에서 휴는 한 어제 상하에서 휴는 학교 어제 | 관광호텔업 | 좌동. 30실 이상 |
| | | | | 수상관광호텔업 |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여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 에게 이용. 30실 이상 |
| | | | | 한국전통호텔업 | 한국전통 건축물에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시설+부대시설 갖추어 제공 |
| | | | | 가족호텔업 |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+취사도구 또는 숙박에 딸린 음식. 운동. 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. 30실 이상. 객실별 19㎡이상 |
| | | | | 호스텔업 |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시설, 샤워장,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. 정보교류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 |
| | | | | 의료관광호텔업 | 19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20실 이상의 객실보유 및 취사도구를 반드시 보유, 연간 기준으로 총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이 40% 초과 불가, 의료관광호텔 시설과 의료기관시설은 별개로 분리되도록 하여 의료관 광호텔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라는 취지에 충 실하게 운영하여야 함. 2014년 2월 말 부터 시행 |
| | | | | 소형호텔업 | 객실 20실~29실의 호텔업으로 두 종류 이상의 풍속을 저해하지 않는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일반 '모텔'과 다른 관광숙박시설로서의 차별화, 일반주거지역 입지시에는호텔부지(대지)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정하도록 기준 완화,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는 건축 연면적의 50% 이하. 2013년 11월 27일 부터 시행 |
| | | 휴양콘도미니엄업 | |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,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.운동.오락.휴양.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등을 함께 갖춤. 30실 이상 | |
| | 관광 편일업 (허기서 명장 관광 편의사설업증 | 관광펜션업 | |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.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 객에게 이용 | |
| | 관광객 이용 시설업 |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|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 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, 건물 자체가 총합 70평(230㎡)이내 여야 함. 1)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)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호가목,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,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| |
| | | 한옥체험업 | | 한옥(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)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,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| |
| 청이츱 | 농언촌 관광율양 | <mark>놓</mark> 어촌민박사업 | |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「건축법」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| |
| 청소년 활동진홍법 | 청소년 수련시설 | 유스호스텔 | |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·설비와 부대·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 편의제공, 여행청소년의 활동 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| |
| 다중이용감소이 아저라리에 관한특별법 | 다중 이용업 | 고시원업 | | 구획된 실(室)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| |
| 제주특별법 | | <mark>휴양펜션업</mark> | | 관광객의 숙박·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해당 시설의 회원, 공유자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 | |
| 건축법 (건축형태에 따른 단순분류) | 숙박시설 | 일반숙박시설 | | 호텔, 여관, 여인숙 | |
| | | 관광숙박시설 고시원 | | 관광호텔,수상관광호텔,한국전통호텔,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제2조 그리새하시서에 체다하기 이미하는 거요 마하 | |
| | 2종근린 생활시설 | 고시원 | |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함.※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㎡미만인 것 | |
| | 업무시설 | 오피스텔 | | 업무를 주로 하며,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 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. | |
| | 공동주택 | 기숙사 | |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 갖추되,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| E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아니한 것※「교육기본법」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 |